

제38/2019/QH14호 베트남 조세관리법에 관한 뉴스

제38/2019/QH14호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 126/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1월 03일



개요

2020년 10월 19일 정부는 제38/2019/QH14호 베트남 조세관리법 (“제38호 조세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 126/2020/ND-CP호 시행령 (“제126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본 시행령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발생하는 기업; 계산서 및 증빙서류 적용; 조세 및 계산서에 관한 행정제재, 관세에 관한 행정제재를 제외 조세관리 및 국가예산의 기타 징수금에 적용된다.

제126호 시행령은 조세행정 관련 문서를 보완하고 납세자뿐만 아니라 조세당국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2020년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

제126호 시행령은 9개의 장, 44개의 조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일반규정; 6개조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제2장: 세금신고 및 계산; 7개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제3장: 세금 부과고지; 4개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제4장: 납세기한, 납세의무 완료책임; 4개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제5장: 세금 환급, 세금 감면, 세금 취소, 연체이자 및 벌금; 4개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제6장: 납세자 정보 공개.제공에 대한 책임, 상업은행의 의무 및 권한; 5개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 제7장: 조세관리에 대한 행정결정의 강제이행; 7개조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 제8장: 기타 이슈사항; 4개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 제9장: 시행규정; 3개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본 뉴스를 통해 제126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38/2019/QH14호 베트남 조세관리법에 관한 뉴스

제38/2019/QH14호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 126/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1월 03일



1. 사업활동 중단 중인 납세자에 대한 조세관리 (제4조)

- 사업활동의 중단시점을 결정한 근거:
 - 세무등록 및 사업등록을 동시 진행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중단시점;
 - 유관기관에 의해 요청 받은 납세자의 경우: 유관기관에 의해 발행한 공문에 명시된 중단시점;
 -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납세자의 경우: 사업중단 전 최소 01일의 근무일 전에 유관기관에 통지해야 함.
- 사업활동 중단기간동안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 세금 신고.납부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월, 분기, 역년 또는 과세연도의 단위로 충분히 중단하지 않은 경우 월별.분기별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연말 정산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추계과세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는 가족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당국은 추계과세액을 재결정한다;
 - 계산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산서의 사용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가 계산서를 사용하도록 허락된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 및 계산서의 사용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당국의 세금 징수 결정 및 통고, 조세관리에 대한 행정제재, 세무 조사.감사에 관한 결정 및 통지를 준수한 의무가 있다.
- 납세자가 조세당국에 직접 등록하고 등록된 주소에서 운영.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세당국에 의한 통지서가 발행된 경우 납세자가 사업활동 중단을 신청할 수 없다.



제38/2019/QH14호 베트남 조세관리법에 관한 뉴스

제38/2019/QH14호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 126/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1월 03일



2. 법인세 ("CIT") 신고 및 납부 (제8조)

- 회계법에 따라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대상인 납세자의 경우 분기별 재무제표 및 세법규정을 근거하여 분기별 임시 납부 CIT액을 산출한다.
- 회계법에 따라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납세자의 경우 분기별 영업실적 및 세법규정을 근거하여 분기별 임시 납부 CIT액을 산출한다.
- 과세연도에 첫 3분기의 임시 납부 CIT액은 연간 정산에 따른 납부 CIT액의 75%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 과세연도 첫 3분기에 임시 납부 CIT액을 미만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임시 납부 기한일의 익일로 부터 국가예산에 실제 납부된 날까지 연체된 일수 만큼 미만세액에 해당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 상기 분기별 CIT 납부 및 연간 정산에 대한 규정은 외국계 운송사에도 적용된다.



3. 세금 부과고지 (제14조)

조세당국이 세금 부과고지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기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감사에 대한 결정서의 서명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준수하지 않음;
-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기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정서의 서명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준수하지 않음;
- 조사/감사당국에 의해 확인에 따라 불법적인 계산서로 재화/서비스를 매매 혹은 불법적으로 계산서를 사용해서 실제 재화/서비스를 거래하여 그 계산서로 과세매출, 세금 계산비용을 신고하였음;
- 납세자가 세금감소를 위해 경제본질에 올바르지 않은 거래 또는 실제 발생에 맞지 않은 거래를 진행함;
- 특수관계자와 거래의 신고 및 가격 산정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혹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발생한 기업에 대한 조세관리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4. 출국시 납세 의무 (제21조)

조세관리에 대한 행정결정의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납세의무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업체의 대표자가 출입국 정지된 경우가 추가된다.

제38/2019/QH14호 베트남 조세관리법에 관한 뉴스

제38/2019/QH14호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제 126/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1월 03일

5. 납세자 정보 공개 (제29조)

탈세, 조세법 위반, 조세당국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외에 조세당국이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 현행 조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서의 제출 기한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영업 종료; 세금코드 종료 절차를 완료되지 않음, 업체가 등록된 주소에 활동하지 않음;
- 세무공무원, 관세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반발하는 행위;
-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보증인이 세금 및 기타 국가예산에 납부금을 납부기한일 혹은 조세관리에 대한 행정결정을 집행기간의 마감일로 부터 90일 이상으로 연체를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음;
- 조세관리에 대한 행정결정에 집행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는 자산 청산하고 탈출을 시도함;
- 법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기타 정보.

6. 상업은행 ("CB") 및 결제중개서비스 공급자 ("ISP")의 의무 및 권한 (제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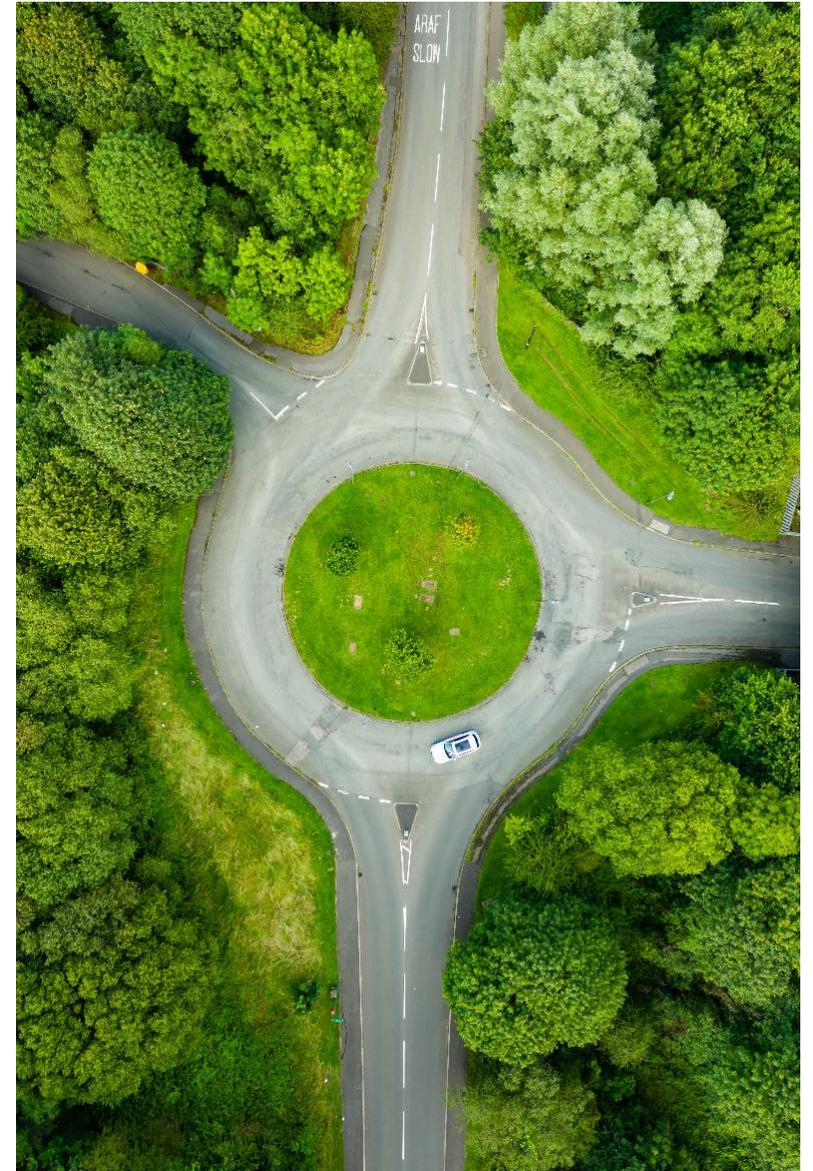
- 본 시행령의 시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정보를 조세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은행 계좌정보는 전자를 통해 월별 다음달 10일동안 업데이트된다.

- 세무조사/감사를 통해 납세의무를 결정 및 조세규정에 따른 세무제재를 강제 집행을 위하여 세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은행계좌 거래내역, 계좌잔액, 거래데이터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으며 제38호 조세관리법 제3조 27항에 따라 베트남에 소재하는 단체, 개인과 전자상 거래 또는 디지털 영업활동이 발생하는 외국인 공급자의 경우 세금징수 및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 외국인 공급자가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CB, ISP가 세금을 징수하여 외국인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 세무총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세금을 아직 등록.신고.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공급자의 명칭, 웹사이트를 파악한 후 CB, ISP에 통보한다;
 - 개인이 외국인 공급자에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여 신용카드 또는 CB, ISP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다른 형식으로 결제할 경우 CB, ISP는 외국인 공급자로 이체된 금액을 감독하고 월별 세무총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CB, ISP는 매월 재무부에 의해 발행된 양식으로 외국인 공급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세액을 신고하고 국가예산에 납부해야 한다.



7. 이전가격 사전합의제 (“APA”) (제41조)

- 제41조 3항 APA 신청에 대한 신규양식 제공한다 (제01/APA-TV호, 제02/APA-CT호 및 제03/APA-MAP호 양식). 구체적으로:
 - APA 신청하는 납세자가 제02/APA-CT호 양식으로 APA 신청서 및 관련 APA 적용에 관한 신청서류를 세무총국에 제출한다.
 - 납세자가 양자 또는 다자간 APA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03/APA-MAP호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 납세자는 공식적으로 APA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총국의 상담을 받기 위해 제 01/APA-TV호 양식으로 상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1조 7항:
 - APA의 발효시점은 제38/2019/QH14호 조세관리법 제3조 6항에 따라 규정된다. (즉,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 외국 조세당국의 관리와 관련 양자간 또는 다자간 APA의 경우 재무부는 정부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하여 보고한다.
- 제41조 12항: 재무부는 APA의 적용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